

1. 개정이유

식약 안전 규제 조화 및 통상규범 대응 등 통상 업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정원 2명(5급 2명)을 증원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업무범위를 명확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2년도 기정예산으로 대체함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및 기획재정부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8. 00. ~ 8.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제12호 중 “의료기기”를 “의료기기(체외진단의료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제28조제1항 단서 중 “13명(행정주사·식품위생주사”를 “15명(행정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약무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 2명, 행정주사·식품위생주사”로 한다.

별표 3의2 중 총계 “658”을 “660”으로 하고, 일반직 계 “657”을 “659”로 하며, 전산사무관 1 다음에 “행정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약무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 2”를 신설한다.

별표 9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
평가대상 조직

조직	정원	평가기간
1) 의약품안전국 마약안전기획관	1명 (고위공무원단 1명)	2023년 2월 28일까지

2) 의료기기안전국 혁신진단기기 정책과	4명 (4급 1명, 5급 2명, 6급 1명)	2023년 9월 30일까지
--------------------------	--------------------------------	----------------

별표 9 제2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평가대상 조직

조직	정원	평가기간
1)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료기기심사부 디지털헬스규제지원과	3명 (4급 1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	2024년 12월 31일까지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3의2의 정원 2명(행정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약무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 2명)은 2025년 7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생주사·수의주사 또는 전산주 사 5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 용한다. ②·③ (생 략)	<u>주사·식품위생주사</u> ----- ----- -----. ②·③ (현행과 같음)
--	--

신 · 구 정원 대비 표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3의2]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정원표(제28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	•	•		
			658		660	+2	
일	반	직	•	•	•		
계		•	•	•	•		
			657		659	+2	
		•	•	•	•		
		•	•	•	•		
<u>행정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약</u>			<u><신 설></u>		<u>2</u>	+2	
<u>무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u>							
		•	•	•	•		
		•	•	•	•		